

대전광역시녹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206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07. 8. 24.

제 출 자 : 대전광역시장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및 「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」의 제·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기금중 여유자금은 「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」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위탁하도록 규정함(안 제5조).

나. 대전광역시 녹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, 그 기능을 대전광역시 공원 녹지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함(안 제6조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및 「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합 의 : 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

(1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

(2) 규제심사 : 규제 신설·폐지 등 없음

(3) 입법예고 : 2007. 7. 20. ~ 8. 8. / 접수의견 없음

대전광역시녹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

대전광역시녹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대전광역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 및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의 규정에 따라 도심내에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시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녹지기금의 조성·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금의 조성) ①대전광역시 녹지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.

1.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
2. 이자 수익금
3. 그 밖의 수익금

②대전광역시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5퍼센트 이상을 출연한다.

제3조(존속기한)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2년까지로 한다.

제4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.

1. 도시경관 향상과 공원·녹지조성을 위한 공공용지의 취득 또는 이와 관련된 사업
2. 자치구에서 추진하는 공원·녹지조성과 관련된 사업의 지원
3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·지방공단에서 추진하는 공원·녹지조성과 관련된 사업의 용자

제5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기금중 여유자금은 「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위탁하여야 한다.

제6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 ①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3조제1항의 규

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녹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.

②대전광역시 녹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공원녹지위원회에서 대행한다.

제7조(회계관직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」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둔다.

1. 기금운용관 : 환경녹지국장
2. 분임기금운용관 : 공원산림과장
3. 기금출납원 : 기금업무 담당사무관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	개
행	정
안	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도심내에 녹지공간을 확보, 시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녹지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대전광역시녹지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으로 조성·관리·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 및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의 규정에 따라 도심내에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시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녹지기금의 조성·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
<p>제2조(기금의 조성) ① ~ ② (생략) ③기금조성기한은 2020년까지로 하고 목표액은 5백억원 이상으로 하며, 필요시 기금조성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</p>	<p>제2조(기금의 조성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<삭제> 제3조와 모순이므로 삭제</p>
<p><신설>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규정</p>	<p>제3조(존속기한)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2년까지로 한다.</p>
<p>제3조(기금의 용도) (생략)</p>	<p>제4조(기금의 용도)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4조(기금의 관리·운영) 기금은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위탁하여야 한다.</p>	<p>제5조(기금의 관리·운영) 기금중 여유자금은 「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 -----</p>
<p>제5조(기금의 심의) 기금의 조성 및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심의는 대전광역시공원녹지위원회에서 행한다.</p>	<p>제6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 ①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」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녹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. ②대전광역시 녹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공원녹지위원회에서 대행한다.</p>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12조(기금관리 공무원)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환경녹지국장으로, 기금출납원은 담당사무관으로 한다.</p>	<p>제7조(회계관직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」 제4조제1항이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둔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기금운용관 : 환경녹지국장 2. 분임기금운용관 : 공원산림과장 3. 기금출납원 : 기금업무 담당사무관
<p>제13조(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)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및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,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 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.</p>	<p><삭 제>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6조제2항에 규정</p>
<p>제14조(기금의 운용계획)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.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3.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. 기타,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	<p><삭 제>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 및 제9조에 규정</p>
<p>제15조(적용 등) ①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 제7조제2항, 제15조제2항 및 제19조를 적용한다.</p> <p>②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에 의하고,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.</p>	<p><삭 제>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6조제1항에 규정</p>

대전광역시녹지기금조성및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

대전광역시녹지기금조성및이용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대전광역시 녹지기금 조성 및 이용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 및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의 규정에 따라 도심내에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시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녹지기금의 조성·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금의 조성) ①대전광역시 녹지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.

1.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
2. 이자 수익금
3. 그 밖의 수익금

②대전광역시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5퍼센트 이상을 출연한다.

제3조(존속기한)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2년까지로 한다.

제4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.

1. 도시경관 향상과 공원·녹지조성을 위한 공공용지의 취득 또는 이와 관련된 사업
2. 자치구에서 추진하는 공원·녹지조성과 관련된 사업의 지원
3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·지방공단에서 추진하는 공원·녹지조성과 관련된 사업의 용자

제5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기금중 여유자금은 「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

례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위탁하여야 한다.

제6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 ①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녹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.

②대전광역시 녹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공원녹지위원회에서 대행한다.

제7조(회계관직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」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둔다.

1. 기금운용관 : 환경녹지국장
2. 분임기금운용관 : 공원산림과장
3. 기금출납원 : 기금업무 담당사무관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도심내에 녹지공간을 확보, 시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녹지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대전광역시녹지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으로 조성·관리·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 및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의 규정에 따라 도심내에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시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녹지기금의 조성·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
<p>제2조(기금의 조성) ① ~ ② (생략) ③기금조성기한은 2020년까지로 하고 목표액은 5백억원 이상으로 하며, 필요시 기금조성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</p>	<p>제2조(기금의 조성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<삭제> 제3조와 모순이므로 삭제</p>
<p><신설>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규정</p>	<p>제3조(존속기한)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2년까지로 한다.</p>
<p>제3조(기금의 용도) (생략)</p>	<p>제4조(기금의 용도)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4조(기금의 관리·운영) 기금은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위탁하여야 한다.</p>	<p>제5조(기금의 관리·운영) 기금중 여유자금은 「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 -----</p>
<p>제5조(기금의 심의) 기금의 조성 및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심의는 대전광역시공원녹지위원회에서 행한다.</p>	<p>제6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 ①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」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녹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. ②대전광역시 녹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공원녹지위원회에서 대행한다.</p>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2조(기금관리 공무원)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환경녹지국장으로, 기금출납원은 담당사무관으로 한다.</p>	<p>제7조(회계관직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」 제4조제1항이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둔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기금운용관 : 환경녹지국장 2. 분임기금운용관 : 공원산림과장 3. 기금출납원 : 기금업무 담당사무관
<p>제13조(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)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및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,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 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.</p>	<p><삭 제>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6조제2항에 규정</p>
<p>제14조(기금의 운용계획)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.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3.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. 기타,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	<p><삭 제>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 및 제9조에 규정</p>
<p>제15조(적용 등) ①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 제7조제2항, 제15조제2항 및 제19조를 적용한다.</p> <p>②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에 의하고,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.</p>	<p><삭 제>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6조제1항에 규정</p>

□ 관계법령

【지방자치법】

제142조 (재산과 기금의 설치) ①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·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③제1항에서 "재산"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.

【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】

제4조 (기금의 존속기한) ①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당해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한다.

제6조 (기금의 관리 및 운용) ①기금은 세계현금(歲計現金)의 수입·지출·보관의 절차,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·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.

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「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한다.

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「지방재정법」에 의한 지방채발행한도액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기금의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.

④그 밖에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8조 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③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,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.

④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3조 (기금운용심의위원회) ①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

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"심의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다만,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1.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
 2.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
 3.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
- ③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16조 (통합관리기금의 설치·운용) ①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통합관리기금의 설치·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【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】

제3조 (기금의 존속기한) ①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. 다만,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.

②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4조 (기금의 수입과 지출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,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.

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.

【지방공기업법】

第49條 (設立) ①地方自治團體는 第2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을 效率的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地方公社(이하 "公社"라 한다)를 設立할 수 있다.

②地方自治團體가 公社를 設立하고자 할 때에는 그 設立·業務 및 運營에 관한 基本的인 사항을 條例로 정하여야 한다.<改正 1992·12·8>

③地方自治團體가 公社를 設立하고자 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住民福利 및 地域經濟에 미치는 效果 사업성 등 地方公企業으로서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에 檢討하여야 한다.

第76條 (設立·運營) ①地方自治團體는 第2條의 事業을 效率的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

요한 경우에는 地方公團(이하 "公團"이라 한다)을 設立할 수 있다.<改正 1992.12.8>

②공단의 설립·운영에 관하여는 제49조 내지 제52조·제53조제1항·제56조·제57조 내지 제63조·제63조의2 내지 제63조의4·제64조·제64조의2·제65조·제65조의2·제66조·제66조의2·제68조·제69조·제71조·제71조의2 내지 제71조의4·제72조 내지 제74조·제75조의2 내지 제75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공사"는 "공단"으로, "사장"은 "이사장"으로, "사채"는 "공단채"로 본다.

【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】

제3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대전광역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개별조례에 의해 설치된 각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사항을 종합·조정하기 위해 총괄기금관리관에 기획관리실장을, 총괄기금담당관에 예산담당관을 지정한다.

제7조(통합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) 시장은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.

1. 통합기금운용관 : 기획관리실장
2. 분임통합기금운용관 : 통합기금업무담당관
3. 통합기금출납원 : 통합기금업무담당사무관

제8조(기금의 예탁의무) 각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. 다만, 시장이 그 기금의 설치목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2조(기금의 배정) ①시장은 각 기금의 원활한 지출을 위하여 기금운용에 필요한 자금을 정기 또는 수시로 각 기금운용관에게 배정하여야 한다.

②각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금배정서를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3조(심의위원회 설치 등) ①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"심의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한다.

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상 13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개별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 기금의 기금운용관
2.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

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⑤심의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.

- ⑥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통할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⑦심의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⑧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「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- ⑨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